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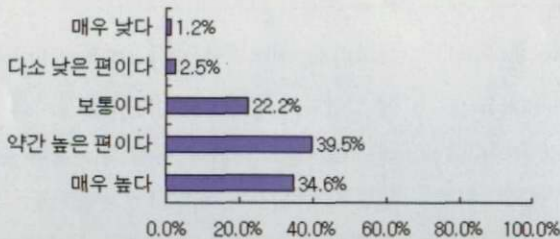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시급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지난해 10월~11월에 걸쳐 국내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 400여곳을 대상으로 (응답업체는 81개처)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 침해 및 보호와 관련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보호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대부분 아니라고 응답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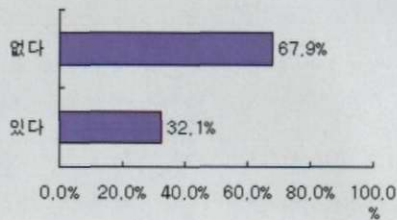
이 설문 조사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법 외의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국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이 되고자 실시되었다. 설문문의 내용으로는 국내 데이터베이스업체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정도 및 그 보호 여부, 그리고 침해에 대한 우려가 데이터베이스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데이터베이스 침해 및 보호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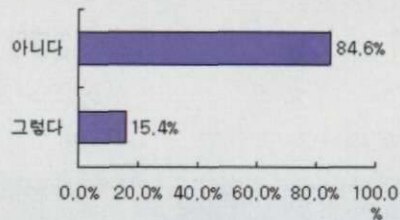
1.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시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 여부에 대한 관심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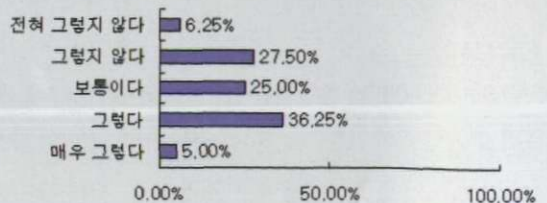
2.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 등의 침해를 받은 경험 여부



3. 침해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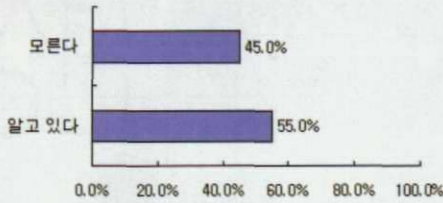


4. 데이터베이스 지적 재산권 침해 우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투자 의욕이 저하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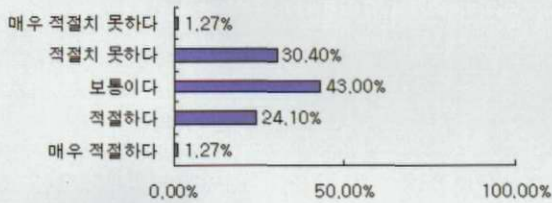




5.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보호 규정(소재의 선택 및 배열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 인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



6. 현행법상의 보호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보호 방안 마련 필요

데이터베이스 제작, 유통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 여부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74.1%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 침해(무단 복제) 우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투자의욕이 저하되는가의 질문에는 40.7%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 유치가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며, 나아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예견케 한다.

실질적으로 설문 대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 중 32%가 무단 복제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는 반면 그 중 84.6%가 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답함으로써 현 데이터베이스 보호 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단, 현재의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4.7%가 그렇다고 답하고 30.8%가 적절치 않다고 답하므로써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 보호 체제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의 대상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로 한정시켰을 때에는 42.3%가 적절치 못하다고 답한 반면 23%가 적절하다고 답함으로써 적절치 못하다는 쪽으로 수치가 올라갔다.

조사 과정 중 흥미로운 사항은 침해 받은 경험이 있으나 구제받지 못한 업체 중 현 저작권법의 보호내용을 알고 있었던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부적절하다고 답한 업체(43.7%)가 적절하다고 답한 업체(18.7%)의 2배를 넘었던 반면 상기의 업체 중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을 알지 못했던 업체로 하여금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내용을 알려 주었을 때는 적절하다는 쪽이 훨씬 우세하게 나타난 것이다.(적절하다 : 50%, 보통이다 : 33.3%, 부적절하다 : 16.6%)

이는 일견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권리 보호가 무리없이 보이지만 실제로 침해 사건에 대해 적용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해석을 더욱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즉 침해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중 현 저작권법의 보호 내용을 알고 있고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침해로부터 구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제작업체의 100%가 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체계가 적절치 못하다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비효율적이고 그 보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비록 회수된 설문지의 수가 예상 외로 적어 조사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으나, 본 설문 결과는 데이터베이스 침해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생각된다.

한편 추가적인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계의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 보호의 형태나 내용에 대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국내 데이터베이스 업계의 육성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 추세 파악, 국내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폭넓은 의견 교환 및 이를 통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